

# [제 1385 호]

2017년 6월 27일(화)

# 고양시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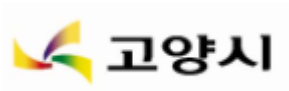
## 차 례

### 고 시

고양시 고시 제 2017-21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1호선 외 15개소 및 주차장설치] 실시 계획(변경)인가 고시	1
고양시 고시 제 2017-211호	호수공원 16호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5
고양시 고시 제 2017-212호	고양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	9

### 공 고

고양시 공고 제 2017-114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 2-119호선외 1 및 주차장 67호)사업 공사 완료 공고	12
고양시 공고 제 2017-1146호	고양시 금고지정 계획공고	14
고양시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공고 2017-1호	공인개각 공고(일산3동)	20





고양시 고시 제2017-210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1호선 외 15개소 및 주차장설치]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고양시 고시 제2017-83호 관련 일산동구 풍동 616-7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3-1호선 외 15개소 및 주차장설치]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자 변경 및 기간연장 신청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고 완료 후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6. 27.

### 고 양 시 장

#### 1.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616-7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1호선 외 15개소 및 주차장설치]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위 치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신설	중로	3	1	12	국지도로	25	대로3-39 (풍동 609-5)	소로2-1 (풍동 616-1)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1	10	국지도로	19	소로2-1 (풍동 616-1)	소로1-2 (풍동 616-1)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2	10	특수도로	160	소로1-1 (풍동 616-1)	소로2-3 (풍동 616-7)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1	3	11	국지도로	22	소로2-3 (풍동 616-7)	중로2-136 (풍동 616-7)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	9	국지도로	247	중로3-1 (풍동 616-1)	중로2-152 (풍동 616-1)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2	9	국지도로	206	소로2-1 (풍동 616-1)	소로2-3 (풍동 616-7)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3	9	국지도로	289	소로2-1 (풍동 663)	풍동 616-7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1	6	국지도로	54	소로2-2 (풍동 616-1)	소로1-2 (풍동 616-1)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2	6	국지도로	67	소로2-3 (풍동 616-1)	소로1-2 (풍동 616-1)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3	6	국지도로	42	소로2-2 (풍동 616-1)	소로1-2 (풍동 616-1)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4	6	국지도로	57	소로2-3 (풍동 616-1)	소로1-2 (풍동 616-1)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5	6	국지도로	42	소로2-2 (풍동 616-7)	소로1-2 (풍동 616-7)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6	6	국지도로	49	소로2-3 (풍동 616-7)	소로1-2 (풍동 616-7)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7	6	국지도로	49	소로2-2 (풍동 616-7)	소로1-2 (풍동 616-7)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8	6	국지도로	42	소로2-3 (풍동 616-9)	소로1-2 (풍동 616-7)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9	6	국지도로	29	소로2-1 (풍동 661)	풍동 611	일반도로	
신설					주차장		풍동616-1		주차장	979㎡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 변경 전)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대치동, 해성2빌딩10층)

성명 : 코리아신타(주) 최익중

- 변경 후)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삼성동 시티파이낸셜빌딩 20층)

성명 : 국제자산신타(주) 이창하

다.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변경 전) 실시계획 인가일 ~ 2017. 8. 31.
- 변경 후) 실시계획 인가일 ~ 2017.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다, 바”항과 같음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소유자 변경)

가. 지번별 토지조서

구분	행정명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풍동	616-7	체	14,938	4,450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삼성동, 20층)	
2	"	616-9	원	5,208	1,232	"	"	
3	"	616-1	체	16,954	5,906	"	"	
4	"	616-17	도	157	11	"	"	
5	"	616-20	잡	212	40	"	"	
6	"	616-23	원	1,322	5	"	"	
7	"	661	잡	1,815	353	"	"	
8	"	663	원	2,707	816	"	"	
9	"	664	원	2,002	198	"	"	
9필지				45,315	13,011	-	-	-

나. 지목별 토지조서

1) 도로

구 분	행정명	지 번	지 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풍 동	616-17	도	157	11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삼성동, 20층)	
1필지				157	11	-	-	-

2) 체육용지

구 분	행정명	지 번	지 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풍 동	616-7	체	14,938	4,450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삼성동, 20층)	
2	"	616-1	체	16,954	5,906	"	"	
2필지				31,892	10,356	-	-	-

3) 잡종지

구 분	행정명	지 번	지 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풍 동	616-20	잡	212	40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삼성동, 20층)	
2	"	661	잡	1,815	353	"	"	
2필지				2,027	393	-	-	-

4) 공 원

구 분	행정명	지 번	지 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풍 동	616-9	원	5,208	1,232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삼성동, 20층)	
2	"	616-23	원	1,322	5	"	"	
3	"	663	원	2,707	816	"	"	
4	"	664	원	2,002	198	"	"	
4필지				11,239	2,251	-	-	-

## 호수공원 16호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367호(1991.6.29.)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최초)되고 고양시 고시 제2017-4호(2017.1.6.)로 결정(변경)된 호수공원 16호에 대하여 공원구역 면적 변경 없이 공원시설 변경에 따른 공원조성 계획(변경) 결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031-8075-438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27일

# 고 양 시 장

### 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 번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공 원	1	호수공원 16호	근린 공원	일산동구 장항동 906번지	851,730.0	-	851,730.0	건설부 고시 제367호 (1991.06.29.) [관보 제11866호 (1991.7.11.)게재]

## 2.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조서

### 가.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유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6	호수공원 16호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에서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유희시설(유원시설)로 변경	- <u>공원구역 면적변경 없이</u> 복수용도 지정에 의한 변경

※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도 및 지형도면 : 시보 게재생략

### 나. 공원조성계획(변경) 총괄표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공원면적	851,730.00	851,730.00		
시설면적	280,516.60	280,516.60 (복수용도:21,440)	32.93	40% 이하 (시설부지면적 / 공원면적) 법 <sup>1)</sup> 시행규칙 제11조
건축면적	13,223.50	13,223.50	1.55	10% 이하 (건축면적 / 공원면적)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의2

주1)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 다. 토지이용계획(변경) 총괄표

시 설 명	면 적(㎡)			비율(%)		공원시설 비율(%)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변경후			
합 계	851,730.00	-	851,730.00	100.00	102.52			
녹지 및 기타	571,213.40	-	571,213.40	67.07	67.07	기정	변경후	
소 계	280,516.60	-	280,516.60 (중복제외)	32.93	32.93 (중복제외)	100	100	
공 원 시 설	도로및광장	170,372.84	-	170,372.84	20.00	20.00	60.74	56.42
	조 경 시 설	6,312.00	-	6,312.00	0.74	0.74	2.25	2.09
	교 양 시 설	63,716.29	21,440 복수용도 지정	63,716.29 (21,440.00)	7.48	7.48	22.71	21.10
	유희 시 설	8,966.90	증)21,440 복수용도 지정	30,406.90 (21,440.00)	1.05	3.57	3.20	10.07
	운 동 시 설	2,100.00	-	2,100.00	0.25	0.25	0.75	0.70
	편 익 시 설	1,101.43	-	1,101.43	0.13	0.13	0.39	0.36
	공원관리시설	19,090.93	-	19,090.93	2.24	2.24	6.81	6.32
	휴 양 시 설	6,000.00	-	6,000.00	0.70	0.70	2.14	1.99
	도시농업시설	2,856.21	-	2,856.21	0.34	0.34	1.02	0.95

라. 공원세부시설별 조성계획(변경) 결정 총괄표

구분	시 설 명		토지이용면적(㎡)		건 축 물 면 적(㎡)				비고
					건 축 면 적		연 면 적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총 계			851,730.00	851,730.00	13,223.50	13,223.50	18,682.74	18,682.74	
시 설 부 지 면 적			28,051,660	28,051,660	13,223.50	13,223.50	18,682.74	18,682.74	중복제외
도로 및 광장	소 계		17,037,284	17,037,284	-	-	-	-	
	-	도 로	3,476,285	3,476,285	-	-	-	-	
	-	광 장	135,609.99	135,609.99	-	-	-	-	
조경 시설	소 계		6,312.00	6,312.00	43.23	43.23	43.23	43.23	
	1	인공산	1,163.00	1,163.00	-	-	-	-	1개소
	2	조형파고라	-	-	-	-	-	-	3개소
	3	스텐드	-	-	-	-	-	-	1개소
	4	노래하는 분수대	2,884.20	2,884.20	-	-	-	-	1개소
	4-1	보조분수(1)	960.4	960.4	-	-	-	-	1개소
	4-2	보조분수(2)	1,099.40	1,099.40	-	-	-	-	1개소
	5-1	전망대(1)	-	-	32.84	32.84	32.84	32.84	1개소
	5-2	전망대(2)(정자)	205	205	10.39	10.39	10.39	10.39	1개소
6	다리	-	-	-	-	-	-	2개소	
휴양 시설	소 계		6,000.00	6,000.00	2,608.03	2,608.03	5,706.30	5,706.30	
	8	노인복지시설	6,000.00	6,000.00	2,608.03	2,608.03	5,706.30	5,706.30	2개소
유희 시설	소 계		8,966.90	30,406.90	-	-	-	-	
	14	어린이놀이터	2,571.60	2,571.60	-	-	-	-	3개소
	15	도섬지	400	400	-	-	-	-	
	16	유희시설부지	5,995.30	5,995.30	-	-	-	-	
	7	유희시설	-	21,440.00	-	6,220.83	-	7,867.75	복수용도
운동 시설	소 계		2,100.00	2,100.00	-	-	-	-	
	17	다목적운동장	2,100.00	2,100.00	-	-	-	-	
교양 시설	소 계		63,716.29	63,716.29	9,202.87	9,202.87	11,401.18	11,401.18	
	7	꽃전시관	21,440.00	21,440.00	6,220.83	6,220.83	7,867.75	7,867.75	복수용도
	9	장미원	8,440.00	8,440.00	-	-	-	-	
	10	자연학습장	28,984.77	28,984.77	16.79	16.79	16.79	16.79	동물원
	12	전통정원	452.4	452.4	-	-	-	-	
	13-1	선인장전시관	2,216.72	2,216.72	1,632.50	1,632.50	1,790.15	1,790.15	
	13-2	화장실전시관	634.89	634.89	183.06	183.06	446.16	446.16	
	24	청소년문화의집	261.6	261.6	171	171	171	171	
	25	작은도서관	66.03	66.03	66.03	66.03	66.03	66.03	
	26	고양역사600년 기념전시관	1,100.76	1,100.76	793.54	793.54	924.18	924.18	
27	생태학습센터	119.12	119.12	119.12	119.12	119.12	119.12		
편익 시설	소 계		1,101.43	1,101.43	949.32	949.32	1,012.78	1,012.78	
	18-1	화장실	468.54	468.54	385.26	385.26	454.26	454.26	4개소
	18-2	화장실	221.89	221.89	164.68	164.68	162.89	162.89	분수옆
	19	간이매점	370.00	370.00	358.38	358.38	354.63	354.63	화장실
	19-1	간이매점	5.00	5.00	5.00	5.00	5.00	5.00	1개소
	20	게이트볼장 사무실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화장실

구분	시 설 명	토지이용면적(㎡)		건 축 물 면 적(㎡)				비고
				건 축 면 적		연 면 적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공원 관리 시설	소 계	19,090.93	19,090.93	420.05	420.05	519.25	519.25	
	21-1 제1주차장	1,844.38	1,844.38	-	-	-	-	
	21-2 제2주차장	11,702.00	11,702.00	-	-	-	-	
	21-3 제3주차장	1,420.30	1,420.30	-	-	-	-	
	21-4 꽃전시관 주차장	3,164.93	3,164.93	-	-	-	-	
	21-5 종합안내소 주차장	318.88	318.88	-	-	-	-	
	22-1 관리사무소	157.40	157.40	157.40	157.40	157.40	157.40	화장실
	22-2 관리사무소	14.04	14.04	14.04	14.04	14.04	14.04	
	22-3 자연학습원 관리사무소	123.00	123.00	123.00	123.00	123.00	123.00	화장실
	23 컨트롤타워	346.00	346.00	125.61	125.61	224.81	224.81	1개소
도시 농업 시설	소 계	2,856.21	2,856.21	-	-	-	-	
11 농경지	2,856.21	2,856.21	-	-	-	-		
녹지 및 기타		571,213.40	571,213.40	-	-	-	-	
녹지 및 기타	소 계	571,213.40	571,213.40	-	-	-	-	
	녹 지	310,672.40	310,672.40	-	-	-	-	
	호 수	260,541.00	260,541.00	-	-	-	-	분수 3개

#### 마. 도로세부결정조서

구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34,762.85				
	1	8.5	59.53	506.00	2-연2도로	장항동 906	장항동 906	
	2	7.5	907.66	6,807.50	2-연3도로	장항동 906	장항동 906	
	3	7.5	1,984.45	14,883.36	2-연4도로	장항동 906	장항동 906	
	4	6	237.33	1,424.00	3-진1도로	장항동 906	장항동 906	
	5	3	165	495.00	3-진2도로	장항동 906	장항동 906	
	6	3	464.87	1,394.63	3-진3도로	장항동 906	장항동 906	
	7	3	268	804.00	3-연1도로	장항동 906	장항동 906	
	1	3	404	1,212.00	3-연2도로	장항동 906	장항동 906	
	1	6	55	330.00	3-연3도로	장항동 906	장항동 906	
	1	3	970	2,910.00	3-연4도로	장항동 906	장항동 906	
	1	3	335	1,005.00	3-연5도로	장항동 906	장항동 906	
	1	3	106.16	318.50	3-연6도로	장항동 906	장항동 906	
	2	3	337	1,011.00	3-연7도로	장항동 906	장항동 906	
	3	3	128.69	386.07	3-연8도로	장항동 906	장항동 906	
	4	2	17	34.00	3-연9도로	장항동 906	장항동 906	
	5	2	110	220.00	3-산1도로	장항동 906	장항동 906	
	6	2	65	130.00	3-산2도로	장항동 906	장항동 906	
	7	2	180	360.00	3-산3도로	장항동 906	장항동 906	
	8	4.5	118	531.79	3-연10도로	장항동 906	장항동 906	

#### 바. 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필지		851,810.5	851,730.0			
일산동구 장항동 906	공	851,810.5	851,730.0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	

## 고양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양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지역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7일

고 양 시



1. 고 시 명 : 2017년 고양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

2. 지정 및 해제 사유

- 지정사유 :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해제사유 :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에 따른 지정목적 달성

3. 지정 및 해제 연월일 : 2017. 06. 27.

4. 지정 및 해제 대상지의 지번·지목·면적

1) 지정 지역

소 재 지				지목	지 적 (㎡)	지정면적 (㎡)	비고
시	구	동	번지				
합 계					59,768	3,911	
고양	덕양	내유	산106	임	49,783.53	3,552.39	신규 지정
			1019-17	천	9,984.87	358.95	

2) 해제 지역

소 재 지				지목	지 적 (㎡)	해제면적 (㎡)	사업의 종류	비고
시	구	동	번지					
합 계					147,893	415		
고양	덕양	선유	산43-2	임	137,752	28	야계사방사업 ·사방지지정 (제2017-124호) (2017.04.11.)	고양시 산사태취약지 지정 (제2016-164호) (2016.06.21.)
			180	전	1,276	138		
			184	전	3,154	5		
			506	구	5,441	244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 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 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 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  
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이해관계인은 우리 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녹지과(☎031-8075-43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 2017년 고양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심의안건	토지소재지			지번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취약지역 유형	사업종류	성명	소유자		비고
	시도	시군	동							주소	주소	
계				2필지	59,768	3,911.34						
제2017-1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산106임	49,783.53	3,552.39	토석류	계류보전	조*영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21가길		
									조*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40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1019-17천	9,984.87	358.95			국(건설부)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 2-119호선외 1 및 주차장 67호)사업 공사완료 공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 고시 제2015-165호 및 제2017-7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인가를 득하여 시행한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2-119호선외 1개노선, 주차장67호(킨텍스S1, S2부지 내 도로)]사업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기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7일

### 고 양 시 장

#### □ 공사완료 내용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607-4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중로2-137호선외 1개노선(킨텍스1단계 S1, S2부지 등)

#####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1) 도로

구분	규 모				연장 (m)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결정	중로	2	119	18.5	178	대화동 2604-4	대화동 2307-5	
시행	중로	2	119	18.5	178	대화동 2604-4	대화동 2307-5	
결정	중로	2	140	15~18	196.5	대화동 2307-12	대화동 2600-6	
시행	중로	2	140	15~18	196.5	대화동 2307-12	대화동 2600-6	

## 2) 주차장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결정	67	주차장	대화동 일원	6650.4	
시행	67	주차장	대화동 일원	6650.4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경기도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성명 : 고양시장(마이스산업과장)

### 마. 사업의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7.06.30.

### 바. 관계도서 : 게재 생략

## 고양시 금고지정 계획공고

고양시 금고 약정기간이 2017.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고양시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7일

고 양 시 장

1. 지정방법 : 일반경쟁
2. 약정기간 : 4년 (2018. 1. 1. ~ 2021. 12. 31.)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4. 금고의 수 : 단수금고(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는 제외함.
5. 시 금고 주요업무
  - 가.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나.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 다.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
  - 라.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에 기여
  - 마.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 6. 신청절차

### 가. 관련서류 열람

- 기 간 : 2017. 7. 3.(월) ~ 2017. 7. 4.(화), 09:00~18:00
- 장 소 : 고양시청 세정과(신관 지하1층) ☎031-8075-2255~6
- 열람서류 : 세입·세출결산자료 및 부속서류(2014 ~ 2016)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서, 「고양시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 등

### 나. 제안신청서 접수

- 기 간 : 2017. 7. 17.(월) ~ 2017. 7. 18.(화), 09:00~18:00
- 장 소 : 고양시청 세정과(신관 지하1층)
- 제출부수 : 12부(원본 1, 사본 11), 요약서 12부 별도
- 제출내용 : 「고양시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 의한 지정서류  
↳ 관련서류 열람기간 별도 배포
- 제출방법 : 방문제출

##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별첨

## 8. 평가(심사) 및 지정방법

- 가.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고양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함.
- 나. 고양시 금고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제출된 제안서를 근거로 종합적으로 서류 심사함.
- 다. 금융기관별 평가결과 최고득점을 받은 금융기관을 우선 지정 하되 우선 지정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차순위 은행을 우선 지정대상으로 선정함.

라. 고양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면심사도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대표성이 있는 자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금융기관의 책임으로 함.

## 9. 약정체결 및 손해 배상

- 가. 우선 지정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 나.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향후 금고 지정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10. 기타사항

- 가. 제안서는 「고양시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나.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다. 제안서 접수마감 후 추가 및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함.
- 라. 이 외 세부사항은 「고양시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 따름.

【별첨】

##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I. 총괄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	
	1) 국외 평가기관	(6)	
	2) 국내 평가기관	(4)	
	※ 지역조합인 경우, 국내평가기관만으로 전체 평가(10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0)		
1) 총자본비율 (안전성)	(7)		
※ 지역조합인 경우, 순자본비율로 평가			
2)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7)		
3) 자기자본 이익률 (수익성)	(6)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협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1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5)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8)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계획	(4)		

##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30점)

####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평가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하여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가장 최근의 평가를 기준으로 평가
  -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등급에 따라,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0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1) 총자본비율(안정성, 7점)
  - (2)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7점)
  - (3) 자기자본 이익률(수익성, 6점)

###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

-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자치단체가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를 비교·평가한 후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1점)

####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5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8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점)**

-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 계획 등을 비교·평가하여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점)**

- 세입·세출 전산화, 자금운용 전산화, 각종 보고서 전산화, 송금 전산화 등 금고인프라를 비교 평가하여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 금고 관리인력 비교 평가하여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7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지방세입금 수납개선 및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점)**

- OCR시스템 운영 현황 및 실적과 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9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으로** 평가하되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4점)**

- 고양시에 협력사업비 출연금 지원계획 비교·평가한 후,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 공 고

고양시 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조한 공인을 동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등록 및 폐기 사유 : 마모 및 훼손으로 인한 재등록
2. 신조공인의 최초사용일 : 2017. 7.
3. 신조·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신조공인명	공인의 인영	폐기공인명	공인의인영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3동장인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3동장인	

2017. 6. 27 .

고양시 일산서구청장